

가정폭력

충북해바라기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 수사지원(피해자 진술조사, 수사진행에 대한 상담, 피해사진촬영)
- 상담지원(심리적 안정과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제공, 쉼터 연계)
- 의료지원(상해치료, 진단서, 증거채취, 피해자 의료상담)
- 법률지원(법률구조공단 등 무료법률구조기관 연계)



가정폭력이란?

| 가정폭력이란

01 가정폭력의 법적 의미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반폭력과 다르다.

● 가정구성원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 ※ 동거하지 않는 형제·자매간의 폭력은 가정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 가정폭력 범죄의 범주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학대,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수색, 유사강간, 강요, 공갈, 재물손괴, 아동학대, 아동구결(아동학대범죄는 아동학대특별법에 우선함)

02 폭력의 사회적 의미

친밀한 사이에서(또는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상대방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신체적·성적, 심리·정서적, 사회·환경적 학대를 하는 모든 행위

| 폭력의 유형

01 감정적 폭력

감정적 폭력은 부당하고 심한 말로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다. 많은 언어적 폭력을 포함한다.

- 저주하고 욕하고 소리치는 것
- 반복적으로 괴롭히고 깎아 내리는 것
- 자존심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
- (배우자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모욕하는 것
- (배우자의) 행동을 지배하고 제한하는 것 (예: 전화금지, 친구와의 만남을 제한, 외출금지, 전화도청 등)
- (배우자를) 미행하거나 오고 가는 것을 일일이 점검하는 것
- 잠을 못 자게 하는 것
- 식사할 때 방해 하는 것
- 잘못되는 모든 것에 책임을 지우는 것
- 굴욕적인 행동을 강요하는 것 (예: 무릎을 꿇도록 함)
- 생각, 감정, 선택, 믿음, 행동 등을 비난하는 것
- (배우자를) 하인처럼 대하는 것
-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하는데 (배우자를) 제외시키는 것
- 돈으로 (배우자를) 통제하는 것 (예: 돈을 주지 않고, 일일이 돈의 사용을 허락받도록 하고, 돈의 사용을 묻고, 가정관리는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것)
- (배우자는) 여유가 없이 가게를 꾸러 가는데, 자신을 위해서는 쉽게 돈을 쓰는 것
- 비정상적이나 정신과 진료를 받아 보라고 하는 것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02 심리적 폭력

심리적 폭력은 가해자가 배우자, 자녀, 가족, 친구, 애완동물, 혹은 자기 자신의 신체에 해를 끼친다고 위협하는 것을 말한다. 심리적 폭력은 상처를 주고 분노를 자아낼 뿐 아니라 두려움과 좌절을 느끼게 한다.

학대는 심리적인 학대가 되기 쉽다. 그것은 피해자가 공격이나 다른 파괴적인 결과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심리적 폭력의 목적은 피해자에게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저하시켜 무력하게 하고, 이후의 신체적, 성적, 심리적 학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

- 때리거나 찬다고 위협
- 무기를 갖고 위협
- 네가 떠나면 자해하겠다고 위협
- 배우자가 보는 앞에서 아이들을 꾸짖어 위협
- 동물을 학대하여 위협
- 물건을 배우자가 있는 방향으로 던져 위협
- 물건을 부숨 / 문을 참
- 방 주변에 물건을 던짐
- 신체적 또는 성적학대 이전의 모든 감정적인 학대

03 성적인 폭력

성적폭력은 동의 없이 하는 성적인 행동, 무례한 성적 접촉을 말한다.

● 성행위를 다음과 같은 상황에 강요할 때

- 아내가 '싫다'고 말했지만 존중하지 않는 경우
- 아내가 자고 있을 때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 아내가 '싫다'고 얘기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 아내가 두려워서 '싫다'고 말하지 못할 때
- 구타한 후에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

● 혹은 다음과 같을 때

- 아내에게 보다 선정적인 옷을 입으라고 강요할 때
- 아내의 신체나 신체 일부에 대해 비난할 때
- 과거의 성적인 일로 아내를 학대할 때
- 아내를 창녀라고 부를 때
- 다른 여성과 관계를 가질 때
- 신체적으로 성적인 부분을 공격할 때
- 아내가 원하지 않는 특정한 종류의 성행위를 강요할 때

04 신체적 폭력

신체적 폭력은 다음과 같은 폭력 행동을 포함한다.

- | | | |
|------------|-------------|----------|
| - 따귀 때리기 | - 감금하기 | - 발로차기 |
| - 주먹으로 때리기 | - 꼬집기 | - 몸을 밀기 |
| - 할퀴기 | - 무기사용 | - 질식시키기 |
| - 밀어치기 | - 때리기 | - 불로 지지기 |
| - 잡기 | - 손바닥으로 때리기 | - 물건던지기 |

가정폭력의 원인

| 주요 3대 이론

01 사회문화적 이론

가부장적 사회구조 + 문화가 남성이 여성과 자녀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을 허용 함.
여성주의적 접근치료 이론적용 → 가치관을 재구성

02 가족에 기초한 이론

가족 내의 개인보다 가족 구조 + 가족 상호작용의 문제가 폭력을 야기 함.
→ 가족체계 치료 이론 적용 - 의사소통 기술 강조, 가족상담

03 개인에 기초한 이론

개인 심리적인 문제 : 즉 병리적 성격과 정신 상태가 폭력을 야기 함.
→ 인지-행동치료, 심리역동치료, 애착학대 치료 등의 이론이 적용됨

※ 가정폭력 가해자가 위의 세 가지 요인을 다 공유하더라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개인행동의 선택이며 전적으로 선택한 개인의 책임입니다.



가정폭력의 특성

- 피해자들은 대부분 아내, 자녀 등 사회경제적 약자임.
- 가해자·피해자가 범죄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 부족 경향
- 은폐성 :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음
- 상습성 : 폭력이 반복되며 주기가 빨라진다
- 세대전수성 : 폭력을 경험한 자녀는 이후 특정 상황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
- 순환성(단계별로 진행)을 가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각해지는 경향
- 가정폭력의 순환과정

1단계

- 긴장이 쌓이는 단계

2단계

- 심각한 학대 단계

3단계

- 후회 단계

| 가정폭력 행위자의 특성

- 남성 우월 의식 및 성 역할 고정관념이 강함
- 학대경험 또는 학대목격
- 비합리적 사고
- 낮은 자존감
- 정서적 문제(우울, 분노와 적대감, 질투심, 불신감)
- 자기통제 및 비폭력 기술 부족
(의사소통, 갈등해결, 분노관리, 스트레스 관리 기술 등)
- 알코올 및 약물 남용
- 학대행위에 대한 책임 전가
(상대방 비난, 자신의 학대행위 부인·최소화·합리화 등)
- 감정적 의존
- 성격장애(반사회적 성격장애, 자기애적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 피해자 특성

01 피해자의 정신적 손상 : 자존감 저하 및 희생자화

- 자존심 상한 일을 견디지 못하고 화를 잘 냄
- 가해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
-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망각, 생각의 차단, 자기감정의 부정, 가해자의 판단에 대한 수용 등 「희생자화」됨

02 공포의 재 경험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나타나는 재 경험 증상 및 매사에 경계하고 조심하는 행동
- 불안 및 공포에 질려 있고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해 자포자기 하거나 자신 없는 태도를 보임
- 늘 경계하고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함
-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언행의 일관성 결여

03 독립심 결여

- 매사에 결단을 못 내리고 어쩔 수 없다며 체념
-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다가 대들기도 하고 원망하고 시비를 걸기도 함

04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가능성 상존

- 감정 : 두려움, 적개심, 고립감, 공포, 죄책감, 외로움, 불안, 수치심, 경계심, 우울, 열등감, 과민성, 절망감, 무력감, 무감동, 분노, 무가치감, 낮은 자존감
- 행동 : 부당한 행동에 대한 지나친 수용, 폭력에 대한 합리화·최소화,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조작하는 행동, 좁아지는 시야, 뒷일 처리인의 역할 수행, 자살시도와 같은 극단적 행동

| 피해자녀의 특징

01 사고

- 만성적 피해의식
- 세상에 대한 불신
- 다른 사람의 의도에 대한 의심
-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회의와 불신
- 다른 사람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 세상에 대한 왜곡된 해석

02 감정

- 두려움, 적개심, 고립감, 공포, 죄책감, 외로움, 불안, 수치심, 경계심
- 우울, 열등감, 과민성, 절망감, 무력감, 무감동, 분노, 무가치감, 낮은 자존감

● 일반적 문제행동

- 부모가 서로를 대하는 방법으로 친구들을 대함
- 남들에게 베푼 만큼 똑같은 대우를 기대함
- 충동에 대한 자제력 부족
- 문제 해결능력의 부족
- 과도한 방어행동
-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생활

● 발달 단계별 문제 행동

- 유아기 : 수면장애, 식사장애, 소음에 대한 과민반응
- 아동기 : 심한 부끄러움, 위축행동, 빈번한 신체질환
- 학령기 : 싸움, 폭력, 잦은 결석, 성적부진, 자해행위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01 가정폭력은 부부싸움이다?

싸움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지만 가정폭력은 일방적인 폭행으로 치명적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황폐화를 야기함.

02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다?

어떠한 이유라 하더라도 아내에 대한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는 범죄행위임.

03 내 마누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는 아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가부장 사회의 부산물임.

04 자식이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

아이들에 대한 체벌이 정당화되어 왔지만 올바른 양육방법이 아님.

05 가해자는 정신병자나 알콜중독자다?

구타하기 위한 구실로 폭행을 들먹이거나(의처증) 술을 매개로 이용함.

06 가정폭력은 가난한 집에서 일어난다?

가정폭력은 빈부, 학력 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사회계층에서나 발생함.

07 맞고 사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반복되는 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공포와 좌절이 지속되면 행동 양상의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이며 그것은 결코 폭력의 원인이 아니며 결과이다. 초기에는 극도의 공포심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면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폭력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됨.

08 가정폭력은 경찰이 개입하면 문제를 악화시킨다?

가정폭력은 고질적으로 반복·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만성화 될 우려가 큼.

| 피해자의 신고 기피이유

- 신고로 인하여 안전이 더 위협당할 것이라는 보복의 두려움
- 가정폭력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에 대한 수치심 및 부끄러움
-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등 문화적 압력
- 신고를 하면 이혼을 해야 하고, 이혼 시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독립에 대한 두려움
- 참고 견디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
- 참고 지내다보면 배우자가 스스로 변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

가정폭력 대처요령

| 피해발생 시 대처요령

※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 할 수 있다(제4조1항)

● 112신고 : 경찰관 현장출동

-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피해자를 분리 범죄 수사
-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로 인도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 의료기관 인도
- 폭력행위 재발 시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신청 고지

※ 충북해바라기센터로 피해자 연계 시 상담지원, 의료지원, 피해자조사

● 충북해바라기센터 : 043-272-7117, 274-7117

- 수사지원 (피해자 진술조사, 진술녹화, 수사진행에 대한 상담, 피해사진촬영)
- 상담지원 (심리적 안정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 제공 등)
- 사회적지원 (가정폭력상담소 및 관련전문기관, 보호시설 연계)
- 의료지원 (상해치료, 진단서, 증거채취, 피해자 의료 상담)
- 법률지원 (법률구조공단 등 무료법률기관 연계)

● 여성긴급전화1366 : 국번 없이 1366

- 긴급위기 상담 및 긴급피난처 운영
- 경찰연계 재발우려 가정 모니터링, 피해자 상담
-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

● 가정폭력전문상담소

- 가정폭력 지속 상담 및 부부상담
- 가정폭력 행위자 치료프로그램 운영, 이혼소송 등 법률지원

● 청주가정폭력상담소 : 043-257-0088

- 가정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이혼소송 등)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 증거수집

- 외상은 진료 후 진단서를 발급받고, 얼굴과 상처부위가 같이 나오도록 사진을 촬영한다.
- 찢어진 옷, 피해기록 작성한 것, 피해물품 등을 수집한 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고 보관이 가능하도록 맡겨 차후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 평소에 챙겨둘 것들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카드, 현금, 휴대폰, 간단한 옷, 중요 물품, 임대 계약서, 남편의 재산이나 수입 기록물, 피신처나 도움을 요청할 곳의 전화번호, 신용카드, 은행통장, 중요 증거자료

※ 가족 간의 대화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폭력적 언행을 삼가고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 사용 금지

가정폭력특례법이란?

이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다른 범죄와 같이 형사처벌만 할 경우 벌금형 등이 선고되면 가해자가 오히려 신고한 피해자 때문이라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보다는 피해자에게 벌금을 지불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가정을 더 위험에 빠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지양하고 가정폭력의 근절을 위해 ‘환경의 조정’과 ‘폭력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가정폭력을 범죄 사실로 규정하고 가정폭력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 검찰, 법원의 각 단계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즉각적인 제지를 위한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등을 가능케 하였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 가정폭력사건의 처리절차

가정폭력 신고 후 처리절차

피해자

충북해바라기센터

수사, 상담, 의료, 법률지원

상담소, 보호시설

상담, 신고, 신고의무

고소

경찰

- 응급조치
 1. 폭력 행위의 제지 및 범죄 수사
 2. 해바라기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3. 치료기관 인도
 4. 임시조치 신청 가능 통보
- 임시조치신청 (1호~3호)
- 검찰청 송치 (환경조사서 작성, 가정보호사건처리 의견 제시)

검찰

- 임시조치의 청구 / 형사사건으로 법원에 공소 제기
-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

법원

임시
조치

- 1호: 퇴거 등 격리
- 2호: 주거 · 직장 접근금지
- 3호: 전기통신 접근금지
- 4호: 의료기관 등의 위탁
- 5호: 유치장, 구치소 유치 · 검사의청구,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

이송

형사기소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관할 법원 송치 결정

임시
조치

- 가정보호사건 행위자 소재 불명으로 1년 이상 동행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
- 불처분결정시(성질상 부적절 판단)
- 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불이행 하거나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심리
개시

- 조사(조사관, 전문가 협조) / 동행영장, 임시유치 결정
- 피해자의 진술권

보호처분

불처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 응급조치

-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임하여 폭력행위 제지, 범죄수사, 보호시설이나 의료 기관으로 피해자 인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긴급임시조치 : 사법경찰관의 직권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먼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기존 임시조치 보완)

|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임시조치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의료기관 기타요양소의 위탁
-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보호처분의 내용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내릴 수 있는 조치

- 1호 -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2호 -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3호 - 친권자인 행위자(부모)의 피해자(아동)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4호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 5호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 6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 7호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8호 -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가정폭력 상담기관

가정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7	국번없이 1366
청주YWCA 부설 여성종합상담소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36번길 4	268-3007, 3008
청주가정폭력상담소	청주시 상당구 158번길 5 시민정보센터 1층	257-0088
영동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영동읍 영동시장 1길 31	743-1366
충북여성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음성읍 음성천동길 122	873-1330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 202번길 66-1	아동학대신고112. 216-1391
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438번길 39-17	1577-1389
충주YWCA가정폭력상담소	충주시 사직산21길 34 복합복지관 301호	845-3288
제천가정폭력상담소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 문화회관 3층	645-5690
증평군가족센터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56-2	835-3572
괴산군가족센터	괴산읍 금산길 3	832-1078
단양군가족센터	단양군 단양읍 군청로 85, 울누림센터 3층	421-6200
청주시가족센터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333	263-1817
충북이주여성상담소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26번길 15-2, 4층	223-5254